



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6. 4. 22.] [조례 제2354호, 2026. 4. 22., 일부개정]

경상북도 포항시(여성가족과), 054-270-303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,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1.8.3.>

1. "영유아"란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<개정 2021.8.3.>
- 1의2. "입양아"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영유아를 말한다.<신설 2021.8.3.>
2. "출생 축하금"이란 영유아·입양아(이하 "출생아"라 한다)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.<개정 2021.8.3., 2026.4.22.>
4. "다자녀 가구"란 「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.<개정 2021.8.3., 2026.4.22.>
5. "특별양육금"이란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특별히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.<개정 2026.4.22.>
6. "보호자"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. 다만, 사망·이혼·직업 등의 사유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3조(지원사업) ① 포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1.8.3., 2026.4.22.>

1. 출생 축하금 지원<개정 2026.4.22.>
 3. 다자녀 가구 특별양육금 지원<개정 2026.4.22.>
 4. 결혼·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, 행사, 공모, 홍보 등 지원 사업<개정 2021.8.3.>
 5. 다자녀 가구 우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사업<개정 2021.8.3., 2026.4.22.>
 6. 일·가정 균형 출산친화 환경 조성사업 등
 7. 그 밖에 시장이 결혼·출산·양육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개정 2021.8.3.>
- ② 예산의 신청 및 집행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4조(지원대상)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<개정 2021.8.3.>

1. 출생 축하금은 자녀의 출생일, 입양일, 또는 전입일 현재 포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. 다만, 부모의 사망,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출생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1.8.3., 2026.4.22.>
3. 다자녀 가구의 특별양육금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시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미만 자녀로 한다.<개정 2026.4.22.>

제5조(지원기준 및 방법) ①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생 축하금을 지원한다. 다만,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.

1. 첫째자녀 출생축하금: 일시금 50만원, 돌축하금 50만원
2. 둘째자녀 출생축하금: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, 돌축하금 50만원
3. 셋째자녀 출생축하금: 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, 돌축하금 50만원
4. 넷째자녀 이상 출생축하금: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, 돌축하금 50만원
5. 입양아의 경우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.
6.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일시금 및 돌축하금을 제외한 월지원금에 한정한다.
- ② 특별양육금은 4자녀 이상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으며, 매년 1월 신청 안내 고지(시 홈페이지, 읍·면·동)등을 통하여 보호자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신청일 기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.
- ③ 출생축하금, 특별양육금은 현금 또는 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1.8.3., 개정 2026.4.22.]

제6조(출생축하금의 지원) ①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지원 대상 자녀 출생, 입양 및 전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8.3., 2026.4.22.>

1.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「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2호서식) 1부<개정 2026.4.22.>
2. 보호자 또는 출생아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<개정 2026.4.22.>
- ② 읍·면·동장은 출생, 입양 및 전입 신고 시 출산장려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관련 시스템에 입력 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8.3.>
- ③ 시장은 읍·면·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가정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인에게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8.3., 2026.4.22.>
- ④ <삭제 2021.8.3.>

제7조 <삭제 2021.8.3.>

제8조(환수 및 지원 중단 등)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 또는 특별양육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8.3., 2026.4.22.>

-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가정의 자녀 및 부모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출한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저출산 대책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「포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1.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
2. 다자녀 가구 및 모범 가정<개정 2026.4.22.>

3.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·사업체·기관

제10조 <삭제 2021.8.3.>

부 칙

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12.14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된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2013.2.12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,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2015.6.9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2016.10.1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) ①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첫째자녀에게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10만원 1회 지원한다.

② 제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첫째자녀에게도 적용한다.

부칙 <2019.09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된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.1.1.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1.8.3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되,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돌축하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도 적용한다.

제3조(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경과조치)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부칙 제2조에 따른 돌축하금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.

제4조(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지원에 따른 경과조치) 종전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.

부 칙 <2026.4.2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